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등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082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	3
2. 공중보건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16
※ 참고자료	25
1. 시·도별 지역내 보건의료기관 설치 현황('24.12월 말 기준)	25
2. 2014~2025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현황	26
2.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종별 인력 현황	27
2. 최근 5년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현황	28

I. 개요

1. 제안경위(의안번호 제2216082호)

가. 제 안 자 : 서영석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6. 1. 15.

다. 회 부 일 : 2026. 1. 16.

2.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 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

나.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현행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다 직무교육 기간을 확대하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보다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에 대한 신분·임용, 보수교육, 의료행위의 범위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u>제19조</u> 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u>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1항</u> -----. <u>3의2.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u>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생략)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생략)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생략)
<신설>

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현행과 같음)
- ②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52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

③ 제1항 및 제2항-----
-----.

제1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신분 및 임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이라 한다)-----
-----.

②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을-----.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보수교육) ①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의료행위의 범위)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특별자치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제2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관할구역 이탈금지) ① -----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해당 보건진료소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23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2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복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나.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함)상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함)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며 일정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임. 2024년 12월 기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1,895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은 총 1,827명이 근무하고 있음.

<시·도별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현황>

(2024.12. 31. 기준, 단위: 개소수, 명)

구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간호사)
합계	1,895	1,827
서울	0	0
부산	5	4
대구	18	18
인천	25	25
광주	10	10
대전	7	7
울산	11	11
세종	7	7
경기	155	153
강원	129	129
충북	159	154
충남	236	233
전북	240	230
전남	328	309
경북	297	286
경남	220	206
제주	48	45

자료: 보건복지부

□ 전담공무원은 「농어촌의료법」 제16조제1항1)에 따라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의료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배치되어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참고로, 현재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그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6주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이론 10주, 임상실습 10주, 현지실습 6주로 구성됨.

< 2025-2026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 교육 >

교육과정		교육일정	기간	교육 운영기관	
이론교육	기본	2025.11.17. ~ 2025.12.19.	5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문	2025.12.22. ~ 2026.01.23.	5주	권역 교육기관 (경강/충청/경상/전라)	
현지실습 (기초)	보건진료소	2026.01.26. ~ 2026.02.06.	2주	권역 교육기관	보건진료소
임상실습	의료원	2026.02.09. ~ 2026.03.20.	6주		의료원
	보건소	2026.03.23. ~ 2026.04.17.	4주		보건소
현지실습 (심화)	보건진료소	2026.04.20. ~ 2026.05.15.	4주		보건진료소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현재 지역 의료 인프라 격차와 의료 취약지 접근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는 공중보건 의사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²⁾ 등을 통해

1) 「농어촌의료법」

제1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격)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농어촌의료법」

제3조의3(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의료 취약지의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공중보건직의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의료 취약지 의료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지속됨에 따라 전국에 1,895개소가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존도는 상승하는 측면이 있음.

< 2024년 공중보건직의사 현황 >

구분	'24.3월 인원(A)	'24년 복무만료(B)	'24년 신규편입(C)	만료 대비	'24.4월인원 (D=A-B+C)	'24.3월(A) 대비
합 계	3,167	1,018	716	70.3%	2,865	▲302
의과	1,429	471	255	54.1%	1,213	▲216
치과	683	228	185	81.1%	640	▲43
한 의과	1,055	319	276	86.5%	1,012	▲43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런데, 현행 「농어촌의료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에서 1인 단독으로 근무하는 전담공무원은 ‘경미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어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일차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면허·법적 범위에 한계가 있음. 더욱이, 고령화·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 취약지 주민 수요가 경증 질환에 대한 단순 외래성 처치를 넘어 만성질환 관리와 복합질환 초기 대응 및 지역 돌봄 연계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이러한 수요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 전담공무원 제도의 자격·역량 및 지원체계만으로는 주민 수요와 환자안전 요구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

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공중보건직의사의 신규 편입 현황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수요 전망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직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이하 “전문전담공무원”이라 함)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전담공무원의 직무교육 기간보다 2배 이상 확대된 52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보건진료소 근무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경미한 의료행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현행 전담공무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⁴⁾

○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 요건이 강화된 전문전담공무원이 전담공무원보다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바, 경증 질환에 대한 외래 처치의 안전성 제고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고령화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이 발의된 바 있음(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081)

4)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는 「간호법」 제5조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2년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간호사에 대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간호법」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의료법」이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⁵⁾이라는 엄격한 테두리를 둔 이유는 의료의 안전성과 법적 책임의 명확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전담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넓어져 경증 질환의 범위나 처방 가능 의약품의 종류(전문의약품 등)가 늘어나고 재진단 및 투약 기간이 연장되는 등 전문전담공무원의 독자적 판단 영역이 현행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담공무원이 배치된 지역의 보건진료소와 전문전담공무원이 배치된 보건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범위도 달라지게 되어 의료취약지역별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도입 여부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이라는 동 제도의 목적, 의료의 안전성

5) 현행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된 지침으로 동 지침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행하는 진찰 및 검사 기준, 환자이송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처치할 수 있는 통상적인 질병의 종류 및 처치방법, 보건진료소 의약품 기준과 함께 증상중심의 의사결정 지침 투약 및 처치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동 지침에 따른 기본 진료방침은 “합병증이 없는 복통, 기침, 발열, 피로, 설사 등을 동반한 증상 및 질환으로 규정된 약품 범위 내에서의 치료 및 투약을 실시하며 7일만에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환자는 의사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투약기간은 1회에 5일간으로 함. 다만,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예외로 만성질환의 조절이 잘되는 환자에 한하여 의사의 치료가이드라인 처방 시 60일까지도 가능함.

및 법적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원칙의 취지,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전문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보건(지)소나 의료기관 등과의 원격 협진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전담공무원과 전문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은 직무교육 기간의 차이로만 구분되고 있음. 이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전담공무원이 52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으면 전문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지, 혹은 현재 전담공무원이 아닌 사람만이 52주 이상 직무교육을 받으면 전문전담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위의 두 가지 경로가 모두 가능한지가 불분명해 보임.

- 개정안이 전문전담공무원의 임용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라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중인 전담공무원이 소정의 직무교육을 추가로 이수할 경우 전문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임용 경로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6)는 제1항에서 8가지의 의료행위의 범위 외에 제2항

에서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제19조제1항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임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게 되면 현재 전담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담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하여 위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기존 전담공무원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임.

□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에 이미 전담공무원 제도로 경미한 의료행위

6)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 ① 법 제19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2.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3.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4.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 진료지침에 따라야 한다.

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전담공무원 제도 신설은 불필요 하며,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외에 추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비전문가인 전문전담공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허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의견임.

2. 공중보건 의사 의무복무기간 단축(안 제7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3년에서 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 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u>군사 교육소집기간</u> 외에 3년으로 한 다. ②·③ (생략)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u>군사교 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u> ----- -----.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사항

□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 제2조제1항 등과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임.

○ 공중보건의사는 대부분 의료 취약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사업 및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

(단위 : 명)

배치기관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3,523	3,365	3,175	2,851	2,551
보건(지)소	3,041	2,901	2,716	2,414	2,156
병원선·이동진료반	27	24	25	30	25
국·공립병원	200	195	194	183	162
국가보건기관	67	61	57	55	60
응급의료기관 등	88	85	84	77	62
보건단체 복지시설	4	4	4	4	3
교정시설 등	96	95	95	88	83

자료: 한진옥, 「법·제도의 공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보건의료기관」, 「국회입법조사처」, 2025. 11.

○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2020년 1,309명에서 2025년 738명으로 감소하였고 이중 특히 의과의 경우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급감하였음. 이로 인해 2025년 기준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가능한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의과 공보의가 1명

이상 배치된 보건지소는 496개에 불과하고, ‘순회진료’ 방식으로 운영되는 보건지소와 미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가 각각 610개와 128개에 달함.

< 공중보건 의사 신규 편입 인원 현황 >

(단위 : 명)

연 도	계	의 사			치과 의사	한 의사
		소 계	전문 의·인턴	일반 의		
2020	1,309	742	397	345	201	366
2021	1,033	478	144	334	231	324
2022	1,048	511	352	159	206	331
2023	1,107	449	298	151	251	407
2024	709	249	203	46	185	275
2025	738	247	-	-	221	270

자료: 보건복지부

< 2025년 공중보건 의사 지침 기준에 따른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

구 분	2025년 지침상 공보의 배치 가능 보건지소	의과 공보의 1명 이상 배치된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보건지소	
			실제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되어 있으나, 순회진료 등으로 운영 중	미운영
시·도 계	1,234	496	610	128
강원	96	49	43	4
경기	88	32	28	28
경남	172	70	89	13
경북	212	84	112	16
광주	0	0	0	0
대구	14	2	12	0
대전	0	0	0	0
부산	2	1	1	0
세종	10	1	9	0
울산	7	0	3	4
인천	22	16	6	0
전남	216	90	108	18
전북	145	48	80	17
제주	8	8	0	0
충남	150	53	79	18
충북	92	42	40	10

자료: 보건복지부

○ 공중보건의사가 주로 근무하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공공의료의 최소 단위라는 측면에서 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은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 감소는 상대적으로 장기인 복무기간, 업무 과중, 낮은 처우 및 비효율적인 배치 구조, 의사 국가시험 성별 합격자 비율, 현역병 입영 선호 현상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중 복무기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농촌의료법」 제7조와 「병역법」 제34조제2항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22일)⁸⁾을 제외한 3년으로 1979년 제도 도입 이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953년 36개월로 확정된 이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꾸준히 단축되어 현재 육군·해병대, 해군 및 공군의 복무기간은 각각 18개월, 20개월 및 21개월임.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할 경우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 이상임.

7)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8) 「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① 군사교육소집은 군사교육을 위하여 보충역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기·소집기간·소집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시간로역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더욱이 육군 병장 기준 월급(내일지원금⁹⁾ 제외)이 2017년 216,000원에서 2025년 1,500,000만원으로 약 7배 증가하는 등 현역병에 대한 급여와 복지 수준도 대폭 개선되고 있는데 비해 공중보건의사 중 전문의 수련경력이 없는 2년 이상 근무한 공중보건의사 경우 그 봉급¹⁰⁾은 중위 3호봉(2,347,700) 수준으로 현역병(병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임.

○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처우개선 등에 따라 최근 의대생이 의사 자격을 획득한 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어 군복무를 대체하기보다 의대 재학 중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¹¹⁾

○ 아울러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병적에 편입된 단기복무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도 「군인사법」 제7조제3호¹²⁾에 따라 3년으로 공중보건의사와 동일한 상황에서 전문의의 경우 임상 경험 유지의 필요성이나 경력 단절 우려 등의 측면에서 군의관을 보다 선호할 수 있음.¹³⁾

9) 2025년 기준 육군 병장의 월 최대 수령액은 약 205만원(월급 150만원, 내일준비금 최대 55만원)

10) 봉급 외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과 월 2만원 내의 진료수당이 추가됨.

11) 의대생 중 현역사병 입영 현황: ('22) 191 → ('23) 267 → ('24) 1,363 → ('25) 2,895

12)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4.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으로 하고,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여군(女軍) 중 간호과 장교(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과 장교는 제외한다) 및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의 인력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3) 의과 공중보건의사의 일반의/전문의 비율을 보면 2001년 일반의 149명, 전문의/인턴 808명이던 것이

○ 여기에 더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은 병무청장과 공중보건의사 필요인원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나 「병역법」 제34조¹⁴⁾가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군의관 선발 인원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증가는 군의관보다 공중보건의사의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편입 대상자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확충하여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먼저, 다른 직역의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만을 단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2022년 일반의 352명 전문의 159명으로 변화됨.(자료 : 이성환 등,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5. p.16

14)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통제가 엄격한 군의관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군의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군 의료체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군법무관 등 전문 자격에 기반한 다른 직역의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다음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공중보건의사의 교체주기가 빨라지게 되어 지역환자(만성질환·노인)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음. 또한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단독·소규모 근무는 숙련이 쌓이기 전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감독·협진·표준진료지침·원격자문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의무복무 부담이 줄게 되면 공중보건의사 지원·선발의 안정성이 개선되어 공중보건의사 편입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반면 그 단축에도 불구하고 연간 편입 인원이 계속 감소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공중보건의 현원이 감소하여 취약지 의료공백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¹⁵⁾

15)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후 신규 편입규모(약 200명) 및 최근 의대생 군휴학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원감소 효과보다 편입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공중보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편입지원율을 높여 의료 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병무청은 보충역 복무제도로써 비슷한 편입요건 및 복무형태를 가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국방부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의 불가역성 및 공공분야 업무 공백 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대한의사협회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임.

<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 편입지원율을 높여 의료 취약지역 진료공백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안의 취지에 동의함
병무청	○ 보충역 복무제도로써 비슷한 편입요건 및 복무형태를 가진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와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

구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
국방부	○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및 군사교육기간 복무기간 산입은 △의무장교 및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성, △복무기간 단축의 불가역성 및 △공공분야 업무공백 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 필요
경기도 가평군	○ 전담공무원과 전문전담공무원의 구분 기준은 52주라는 직무교육 이수 기간 여부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이나 현장 경험에서의 차별성이 충분히 반영 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실무 경력(10년) 요건 추가 필요
경상남도 함양군	○ 보건진료소 내 이원화된 직제 운영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대체 인력이 없는 농어촌 현실상 52주 장기교육은 심각한 진료공백을 초래함. 기존 숙련 인력의 경력을 인정하여, 단기 심화과정(보수교육) 이수만으로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가 필요.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 의사 지원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

□ 참고로 개정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시·도 별 지역내 보건의료기관 설치 현황('24. 12월 말 기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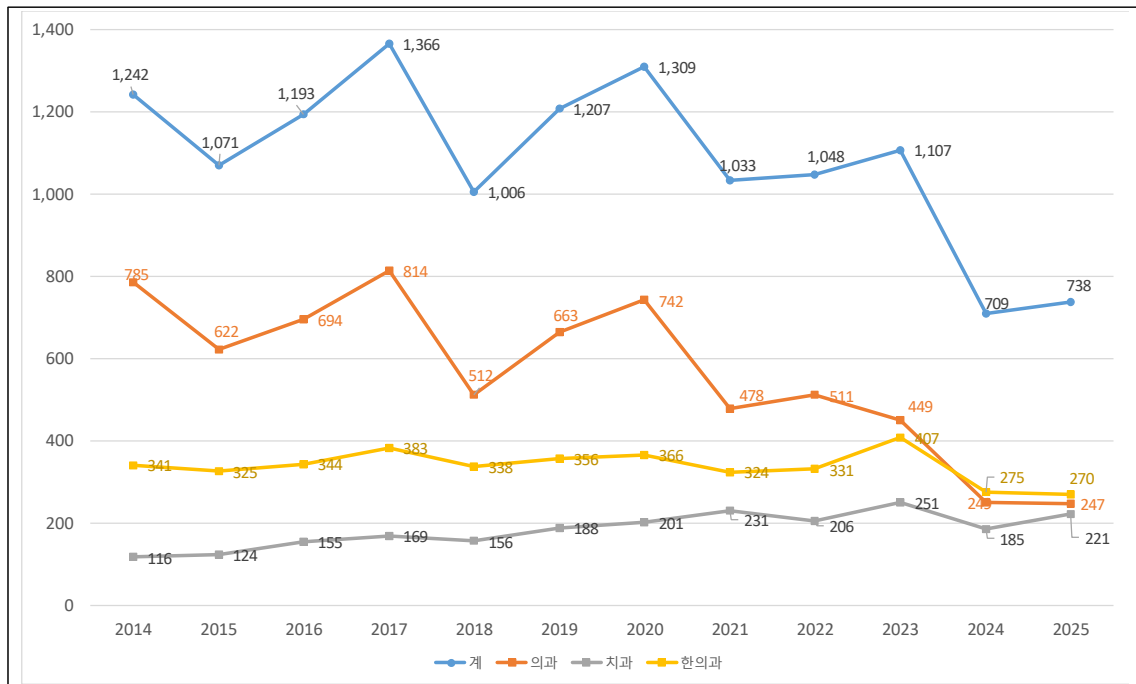
(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합계	261	1,337	121	1,895
서울	25	38	0	0
부산	16	10	16	5
대구	9	16	2	18
인천	10	26	12	25
광주	5	1	9	10
대전	5	6	1	7
울산	5	8	2	11
세종	1	10	1	7
경기	49	114	25	155
강원	18	99	12	129
충북	14	95	4	159
충남	16	150	9	236
전북	15	148	8	240
전남	22	216	8	328
경북	24	216	2	297
경남	21	173	8	220
제주	6	11	2	48

※자료: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현황(2024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참고2】

2014년~2025년 신규 편입 공중보건기사 현황



【참고3】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직종별 인력 현황
--------------	-------------------------------

(2024.12. 기준, 단위: 명)

구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합 계	5,231	1,867
의사	784	0
치과의사	227	0
한의사	722	0
약사	1	0
간호사	1,634	1,827
영양사	98	0
보건교육사	8	0
방사선사	86	0
임상병리사	99	0
치과위생사	272	1
물리치료사	300	0
작업치료사	36	0
간호조무사	427	3
행정직	57	0
보건직	127	0
기능직 등	353	36

【참고4】	최근 5년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현황
--------------	-----------------------------

(2024.12. 기준, 단위: 명)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간호사)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1,857	1,838	1,852	1,856	1,827
강원	0	0	0	0	0
경기	4	4	4	4	4
경남	8	8	17	20	18
경북	25	24	24	24	25
광주	10	10	9	10	10
대구	7	7	7	7	7
대전	11	11	11	11	11
부산	7	6	7	7	7
세종	156	153	157	157	153
울산	127	129	130	129	129
인천	156	154	157	155	154
전남	235	236	236	236	233
전북	232	237	234	234	230
제주	319	309	314	312	309
충남	298	296	286	292	286
충북	215	206	211	210	206